

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
는 별도정원 운영규정

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훈령 제529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혁신행정담당관), 044-202-7050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)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529호,2025.1.1.>

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